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김용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88

I. 개정안 개요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가. 발의자 : 김용석(도봉) 외 32명
- 나. 발의일 : 2016. 12. 26.
- 다. 회부일 : 2016. 12.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을 시행·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정안 제출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는 상위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시행되고 있는바, 현행 조례에 관련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히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 먼저, 현행 조례 제명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의 용어를 추가하여 명시함.
 - 그리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기념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지원 근거를 명시함.

<표 1.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u> | <u>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u> |
|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 3. (생략) 4. <u>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신설></u> | 제5조(지원 사업) ----- ----- -----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u>제5조의2(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u> 1. <u>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u> 2. <u>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u> 3. <u>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u> 4. <u>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u> 5. <u>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u> 6. <u>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u>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

3. 개정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상위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하여 아래 <표 2>에 제시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이 경우 예산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제12조 제1항)하고 있음.

<표 2. ‘기념사업’관련 상위법률 근거>

| | |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
|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 |
|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 |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 |
|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이에 서울시는 상기의 법률과 현행 조례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2016년 기준)’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기 시행해 왔으며,
 - ‘17년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홍보기념사업(예산 3천만 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관리 등’을 위한 사업(예산 3억 원)이 추진될 예정임.

<최근 4년간, 서울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기념사업 실시 내역>

| 시행 시기 |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 |
|-------|--------------------|----------|---------------------------|--------|
| | 사업명 | 예산(천원) | 사업명 | 예산(천원) |
| 2014 | 생활보조금(매월) 및 장제비 지원 | 127,70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회 개최 | 20,000 |
| | | | 2014 유럽평화기행 <나비의 꿈> | 15,000 |
| 2015 | 생활보조금(매월) 및 장제비 지원 | 123,800 | 광복70주년기념 일본군 위안부 평화콘서트 개최 | 50,000 |
| | | | 2015 유럽평화기행 <나비날다> | 5,000 |

| | | | | |
|------|-----------------------|---------|----------------------|----------------------|
| 2016 | 생활보조금(매월) 및 장제비 지원 | 106,700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 | 100,000 |
| | | |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기념행사 | 30,000 (모금 3억 5천) |
| | | | 2016 평화나비:RUN | 5,000 |
| 2017 | 생활보조금(매월) 및 장제비 지원 | 108,00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홍보 사업 | 30,000 |
| |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관리 등 | 300,000 |

주) *생활보조금 매월, 1인당 70만원씩 지원, 장제 사례 발생시 1백만 원 지원

- 금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명문화 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현행 조례 제5조 제4호)의 범주를 상위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백히 규정(개정안 제5조의2 및 제명)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은 그 타당성이 있고,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특히,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총 239명 중 `17년 2월 현재 39명만이 생존(서울시 관내 12명) 해 있고, 이 분들의 나이는 평균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임.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서울시 차원에서 이 분들 살아생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인권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나아가 향후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역사적 시각을 널리 후세까지 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